

# 2024학년도 2학기 입영휴학자의 성적인정 신청 안내

## 1. 관련규정

- 순천제일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0조(입영휴학자에 대한 성적)
- 순천제일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9조(복학자의 등록)

## 2. 신청대상자

- 수업일수 4분의 3선(2024. 11. 19.(화))까지 정상적으로 출석을 하고 종강일 이전에 군입대로 휴학을 하는 자로서 수시시험 및 기타의 성적으로 대체하고 그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

## 3. 신청서류 및 장소

- 휴학원 및 성적인정신청원을 학사운영처 교무팀에 제출

## 4. 신청방법

- 「성적인정신청원」에 수강교과목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은 후 교과목 담당교원이 제시한 수시시험 및 기타의 평가 후, 신청서류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사운영처에 제출

### <주의사항>

※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후 입영휴학 하더라도 「성적인정신청원」을 미제출하면 성적인정 되지 않으며 복학 시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.

※ 학교 수업일수보다 교과목 수업일수 기준으로 성적인정여부 판단(Term제 교과목 주의)

## 5. 성적처리

- 교과목 담당교원은 성적인정 신청을 한 학생의 출석 일수를 확인(수업일수 4분의 3이상)하여 성적인정 여부를 결정하고, 수시시험 및 기타의 평가 후 성적처리
- 학점관리위원회 심의 후 성적 부여함

## 6. 행정사항

- 각 학과에서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하고 종강일 이전에 군입대로 휴학 하는 학생에 대하여 성적인정신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 당부

## 입 영 휴 학 자 성 적 인 정 신 청 서 (예 시)

학 과 명		건축인테리어과				성명	○○○ 인	
						학번	20200000	
교과목	학점(시수)	총시수	결석시수	출석시수	인정여부	담당교수	확인(인)	
서양건축사	2(2)	30	3	27	인정	○○○	서명	
전공CAD기초	3(3)	45	20	25	불인정	○○○	서명	
* 결석시수 및 출석시수는 휴학일을 기준으로 계산								

순천제일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0조(입영휴학자에 대한 성적)에 의거 성적을 인정받고자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(총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여야 함)

2024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순 천 제 일 대 학 교 총 장 귀하

지도교수	학 과 장	확 인

담 당	팀 장	처 장	총 장	결 재